

2026년 발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식량산업팀)	식량산업팀장 이용현 주 무 관 전소현	031-8008-5461 031-8008-5463

I 사업 개요

□ 추진목적

- 발작물 생산단지 규모화를 통한 생력화·기계화로 생산비용 절감 및 생산량 확대 도모
- 유통·가공시설 개선으로 발작물 소비기반 확충 및 식량자급률 제고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 주요내용

- 계약 재배 등으로 전문취급업체와 연계 5ha 이상 공동 영농하는 농업경영체에 농기계 등 지원
- 농업인 생산 발작물 매입과 판매를 전담하는 발작물 전문취급업체에 발작물 매입·선별·저장·포장·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등

□ 연도별 투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14,153	1,104	1,104	5,184	3,809	2,952
도 비	3,039	265	265	1,089	800	620
시군비	7,088	618	618	2,540	1,866	1,446
자부담	4,026	221	221	1,555	1,143	886

* '21년까지 「잡곡생산 기반조성 사업」 과 「식량작물 재배단지 시설·장비 지원 사업」 으로 추진, '22년부터 「발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 으로 통합

II 2026년 지원계획 (2차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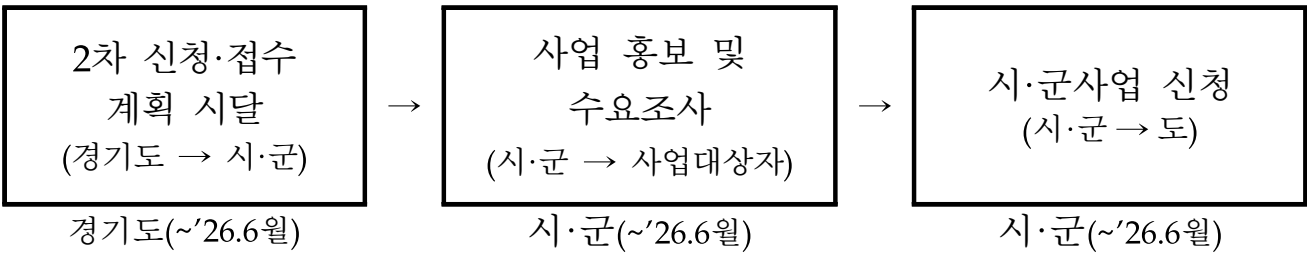
- 사업량 : 12개소 * 시·군 수요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
 - * 1차 : 11개소 선정완료 / 2차 : 1~2개소 선정 예정
- 사업비
 - (당초) 2,666,667천원(도비 560,000, 시군비 1,306,667, 자부담 800,000)
 - (변경) 2,952,381천원(도비 620,000, 시군비 1,446,667, 자부담 885,714)
 - * 1회 추경 사업비 증액 : 60,000천원(도비)
 - ※ 2차 선정 사업비 : 359,714천원(도비 75,540, 시군비 176,260, 자부담 107,914)
- 보조비율 :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대상 : 밭작물 5ha 이상 공동 영농하는 농업경영체, 밭작물 전문취급업체
- 지원대상 품목 : 작물의 분류(별첨 2) 상 미곡을 제외한 식량작물 중 시·군 지정 3품목 * 밀과 주산지 지정 품목(과주-콩, 여주-고구마) 별도 포함
- 지원한도(총사업비 기준)
 - (공동 영농 농업경영체) 계약재배 등으로 밭작물 전문 취급업체와 연계되어 5ha 이상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 최대 200백만원
 -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
 - 밭작물 전문취급업체
 - (시·군 전문취급업체) 시·군 선정 특화 밭작물을 취급하는 농협, 농업법인 : 최대 600백만원
 - (광역 전문취급업체) ①밀, ②시·군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은 품목, ③ 1개 시·군에서만 특화품목으로 선정하였으나,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품목을 취급하는 농협, 농업법인 : 최대 1,000백만원

□ 지원내용

- (공동 영농 농업경영체) 발작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전반
 - 발작물용 파종기, 수확기, 탈곡기, 클러스터 콤바인 및 부속기계, 조수피해 방지시설 등 발작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전반
 -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 공인기관에 등록된 기종(품질보증을 받아 유지·보수가 원활한 제품)
- (발작물 전문취급업체) 발작물 매입부터 가공까지(선별·저장·포장 등) 필요한 시설·장비 전반
 - 선별기, 건조기, 포장기, 저장고, 작업장, 제분기, 가공식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 등
 - 포장재·브랜드 개발, 상품 판촉행사 등 마케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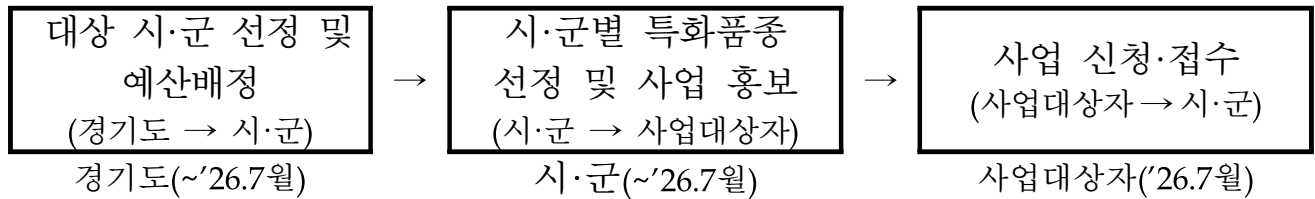
III 세부 추진계획 (2차 신청)

〈 시·군 사업 신청 단계 〉



- 경기도
 - 시·군에 사업 2차 신청·접수 계획 시달 시달('26.6월)
- 시·군
 - 시·군별 사업홍보 및 수요조사(~'26.6월)
 - 사업 희망자가 있을 경우 시·군에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사업 신청('26.6월)

〈 대상 시·군 선정 및 사업대상자 신청 단계 〉



○ 경기도

- 대상 시·군 선정 및 예산배정('26.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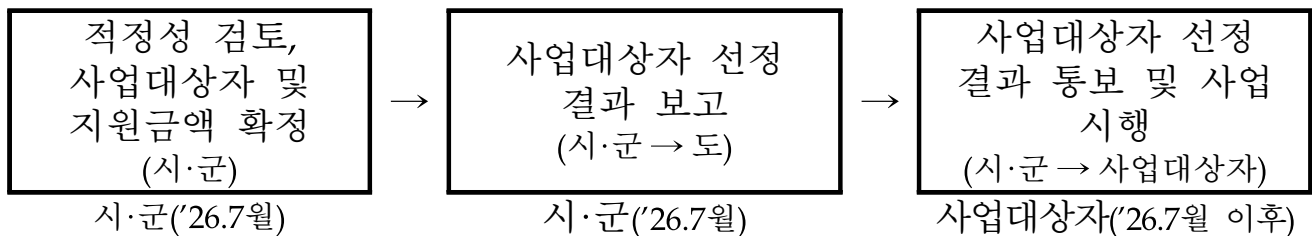
○ 시·군

- 시·군별 특화 발작물 선정 및 사업홍보(~'26.7월)
 - * 식량산업종합계획에 따른 시·군 품목 및 대표작물 육성계획 등을 고려하여 3품목 지정(서식9)
- 사업 신청·접수('26.7월)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 및 검토

○ 사업신청자

- 사업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 2)를 작성하여 시·군 제출('26.7월)

〈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



○ 경기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원 금액(사업비) 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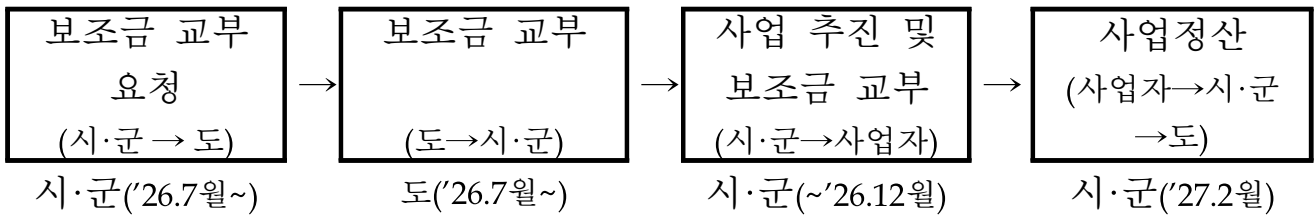
○ 시·군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시·군별 특화 발작물에 따라 대상자별 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도 결과보고('26.7월)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26.7월 이후)
- 도 사업비 내시에 따라 추경 시·군비 확보(수시)

○ 사업대상자

- 시·군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를 받고 시·군 사업 착수
지시 후 사업 시행('26.7월~)

〈 사업 시행 단계 〉



○ 경기도

- 시·군 보조금 교부요청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여 예산 교부('26.7~월)
- 하반기 사업 추진 상황 점검

○ 시·군

- 사업예산 교부 신청('26.7월)
- 사업비는 추진실적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물품 및 용역구매 시설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자금 집행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상·하반기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결과 보고(서식 5)
-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시 변경사유, 사업내용의 적절성 등
시·군 자체 검토하여 승인 후 도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미지원

- 사업 완료 시 사업대상자에게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도에 보고하여야 함(서식 8)

* 보조금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보조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불가피하게 예산의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년도 9월말까지 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 사업 시행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계획서(서식 3)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 완료 시 시·군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사후관리 단계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 시설은 사업 완료 후 10년, 농기계는 내용연수(별첨 3)

중요 재산	사후관리 기간	재산 처분제한
부동산 - 건물, 토지,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한 대상	10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용도 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금지 (단,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도지사의 승인 후 처리)
부동산의 중물 -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저감시설(지열냉난방 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	
부동산의 중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랙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	농기계별 내용연수	

※ 중요재산 제외 범위

- 1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농기계 및 부속기
-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


○ 제재 및 처벌내용

- 사후관리 점검 결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관리가 부실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 관리요령


- 사업 완료 후 시·군에서는 표지판 부착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6) 비치

농업 시설 부착 표지판(안)

	○ ○ 시·군 슬로건
사업명 : ○○○ 시설공사 공사기간 : '00년00월00일 ~'00년00월00일 총사업비 : 000,000천원 도비 00,000천원 시·군비 00,000천원 발주자 : ○○○○ 시공사 : ○○○○	

* 「경기도 도비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표지판 형식 준용

농업 기계·장비 부착 표지판(안)

(기계·장비명)	
본 (기계·장비명)는 경기도와 ○○시·군의 지원을 받아 구입한 기계·장비입니다.	
○ 사업명 : ○ 지원년도 :	
년 월 일 경기도지사·○○시장·군수	
	○○시·군 슬로건

* 규격 : 부착 기종별 규격과 부착 위치 등을 별도 규정 예정

* 재질 : 테프론스티커, 아크릴, 동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시·군 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현장점검 등 실태조사 실시(서식 7)

IV 행정사항

- 지원 요건 확인 및 사업신청 : '26. 6월(시·군 → 도)
- 시·군 선정 및 예산배정 : '26. 7월(도 → 시·군)
- 시·군별 특화작물 선정 및 사업 홍보 : '26.7월(시·군)
- 사업 신청·접수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6.7월(시·군)
- 선정 결과 도 보고 및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26.7월(시·군 → 도)
- 사업 추진상황·사후관리 점검 및 도보고 : 하반기 1회(시·군 → 도)
- 사업 정산 및 도 보고 : '27.2월까지(시·군 → 도)

(서식 2)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 사업위치 :
- 참여농가 : 호 (남 , 여)
- 재배(취급)작목 :
- 계약재배 수매·판매량(직전년도 말 기준)

품 목	계약재배 농가수(호)	수매농가수 (호)	수매물량 (톤)	수매단가 (월)	판매물량 (톤)	판매처
계						

- 시·군별 수매물량(*광역 취급업체인 경우만 기재)

시·군별	합계(톤)	2025년	2026년	2027년(계획)
계				

- 시설·장비 보유현황

- ex) 하우스(10농가 2,000m²), 저온저장고(2동 90m²), 농기계 등

- 주요활동 및 사업현황

-

* 시·군 식량작물종합계획 시·군 품목별 대표조직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내용 기재

* 농식품부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연도별 지원내역 명기

2. 신청지역 특징 (신청품목과 관련한 지리적 특징, 지역농업 여건)

가. 지리(기후)적 특징

○

나. 지역농업 여건

<장 점>

○

<단 점>

○

3.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나. 사업 목적 및 필요성

○

다. 사업내용

○ 세부사업내용

사업내용	품 명	수 량 (개)	사업비(천원)			산출기준	
			계	보조금			자부담
				도비	시군비		
계							
시설·장비	소 계						
농기계	소 계						
기타	소 계						

○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구 분	금 액(천원)	확 보 계 획

○ 사업부지 확보계획

- 사업위치 :

- 확보계획 :

※ 증빙자료 첨부(등기부등본 등)

○ 사업추진일정(월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월 별	추진계획(시설,장비별)	비 고

라. 기대효과

○

마. 사업 확대 계획

○ 참여농가 면적 확대 방안

○ 판로 확대 방안

○

바. 재배면적(계약재배 등) 현황(엑셀파일로 별도 추가 제출)

번호	농가현황		재배(취급)현황				품목	품종 (자원명)	수매 물량
	성명	주소(읍면동, 리)	농지소재지						
			읍면동	리	지번	면적(m ²)			
합계									
1	김00		00면	00리	26-71	5,261	콩	늦서리태	
			00면	00리	26-75	243	콩	대원	
2	강00		00동		산2-7	50	콩	대원	
			00면	00리	25-4	40	콩	대원	

(별첨 1)

발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예시)

신청유형	선정기준
<p>공동영농 농업경영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체 형태(농업법인,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작목반 등) ○ 공동영농규모, 경영체 운영기간, 공동사용 계획 ○ 농기계 보관창고 구비 여부, 자부담 확보 계획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지원
<p>발작물 전문취급 업체(시·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 농가수, 수매농가수, 수매물량, 수매단가 ○ 식량산업종합계획 반영 여부 ○ 판매량, 판매처 확보 여부, 시설(부지) 현황, 자부담 확보 ○ 사업 확대 가능성
<p>발작물 전문취급 업체(광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재배 농가의 시·군 분포도, 수매농가수, 수매물량, 수매단가 ○ 판매량, 판매처 확보 여부, 시설(부지) 현황, 자부담 확보 ○ 사업 확대 가능성

(별첨 2)

■ 농업통계조사 규칙 [별표]

작물의 분류(제2조 관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식량작물	미곡	논벼, 밭벼	
	맥류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두류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기타 두류	
	잡곡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울무, 기타 잡곡	
	서류	고구마, 감자(봄·가을·고랭지)	
	채소	엽채류	배추(일반·고랭지·김장), 양배추, 시금치, 상추, 미나리, 쪽갓, 부추
		과채류	수박, 참외, 오이, 호박(단·일반), 토마토(일반·방울), 딸기, 가지, 메론, 피망(파프리카 포함)
		근채류	무(일반·고랭지·김장), 당근, 토란, 우엉, 연근
		조미채소	고추(멀칭:Mulching, 터널:Tunnel), 마늘[한지형(寒地型)·난지형(暖地型)], 양파(조·중·만생종), 파(대파·쪽파), 생강
	특용·약용 작물	기타채소	근대, 달래, 신선초, 기타 채소
유지작물		유채, 참깨, 들깨, 땅콩	
약용작물		강활, 고분, 구기자, 길경, 당귀, 독활, 두충, 만삼, 맥문동, 목단, 방풍, 백지, 백출, 사삼, 산수유, 산약, 소엽, 시호, 오미자, 의이인, 작약, 지모, 지황, 창출, 천궁, 천마, 치자, 택사, 패모, 하수오, 향부자, 형개, 황금, 황기, 기타 약용작물	
특용작물		박하, 차, 호프, 닥나무, 수세미, 결명자, 농산버섯(양송이·느타리·팽이·영지 등), 기타 특용작물	
과수	기타	면화, 삼, 모시, 왕골, 인초, 해바라기, 아주까리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감(뚝은감·단감), 자두, 대추, 매실, 유자, 기타 과수	
뽕나무 기타작물	뽕나무	뽕나무	
	사료작물	호밀, 옥수수, 기타 사료작물(귀리·유채 등)	
	전매작물	인삼, 담배	
	פות겨름작물	호맥, 자운영, 기타 비료용 작물	
	화훼	화훼	
	기타작물	관상용 나무, 묘목(소나무, 사과 등), 기타 재배작물	

(별첨 3)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제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농업기계	내용연수
1. 경운·정지용 기계	
가. 동력경운기	6년
나. 농업용 트랙터	8년
다. 그 밖의 경운·정지용 기계	6년
2. 재배관리용 기계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다. 농업용 방제기	5년
라. 동력파종기	5년
마. 동력이식기	5년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6년
사. 그 밖의 재배관리용 기계	5년
3. 수확조제용 기계	
가. 동력수확기	5년
나. 동력예취기	5년
다. 농업용 콤바인	5년
라. 동력탈곡기	8년
마. 농산물건조기·곡물건조기	8년
사. 그 밖의 수확조제용 기계	5년
4. 농업용 엔진	8년
5. 농업용 양수기	8년
6. 가정용 도정기	10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기계	5년